사 업 보 고 서

(제 03 기)

사업연도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3월 17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지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전 화) 02-3779-3140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타비상무이사 (성 명) 윤 창 민
(전 화) 02-3779-3140

목 차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확 인 서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담당 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1년 03월 17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대표이사 이 지 연

신고업무담당이사 윤 장 민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Sangsangin Ian No.1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Sangsangin Ian SPAC Ⅰ)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설립일자 : 2018년 09월 12일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전화번호 : 02-3779-3140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카.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여부	주권상장 (또는 등록·지정)일자	특례상장 등 여부	특례상장 등 적용법규
코스닥 상장	2018년 12월 12일	부	해당 없음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 당사는 설립일(2018년 09월 12일) 이후 2019년 11월 01일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이사 선임일	내 용
2018.09.12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 이지연, 기타비상무이사 윤창민, 사외이사 이기범, 감사 서명원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상호	변경 후 상호
2019.05.22	골든브릿지이안제5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상상인이안제1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년 09월 12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8년 09월 12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50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2018년 12월 03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250,000	100	2,000	코스닥상장공모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제1회	2018년 09월 17일	2023년 09월 17일	1,000,000,000	기명식 보통주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09월 16일까지	100	1,000	1,000,000,000	1,000,000	-
합 계	-	-	-	1,000,000,000	-	-	-	-	1,000,000,000	1,000,000	-

＊전환사채 상세내역

구분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발 행 일 자	2018년 9월 17일
만 기 일 자	2023년 9월 17일
권 면 총 액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2)
전환청구기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
전환비율 및 가액	100%,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구분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이안허브 520백만원 (52.00%)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하 동일) 480백만원 (48.00%)
전환주식수	1,000,000주.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3)
보호예수기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비 고	* 인수인 : ㈜이안허브, ㈜상상인증권 * 전환가격의 조정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 갑" 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 갑" 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 기발행주식수" 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 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구분	제1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조정된 전환가격이 " 갑" 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상상인증권, ㈜이안허브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간계약서(하기 참조)를 통해서 당사 및 합병대상기업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 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1.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식 및 인수한 전환사채(이하 "공모전 발행 주식 등")를 각 발행된 때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 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한다.

*2)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 전매제한조치 및 권면분할금지 준수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에 한하며, 발행후 1

년간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고,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는 50매 이상으로 발행되거나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매수가 아닌 거래단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 예탁결제원" 이라 한다)에 예탁(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통해 사실상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에서 같다)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 금산법" 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중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다만, 등록(「공사채 등록법」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발행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이내에는 최초 증권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 분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3) 전환사채 인수자인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는 주주등간 계약을 통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 보유한 회사의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당사자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주)상상인증권 등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 전 발행주식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일체의 주식(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은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1,000,000주)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 동안(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식회사 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한편, 동 전환사채는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전환행사가 가능하나, 전환사채 보유자간 미전환 확약을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전환권 미전환 확약서]

"甲" :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본인" : (주)상상인증권, (주)이안허브

1. "甲"의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전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을 "甲"의 코스닥시장 상장일까지 행사하지 아니할 것임.
2. 상기 제1호외에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본인", "甲"간에 체결된 "확약서 제출 등에 관한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며, 만약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甲"이 한국거래소에 통보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

*5) 당사는 공모자금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하기 위하여 KB국민은행과 공모자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당사 정관 제59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는 주주등간계약서에 의거하여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 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750,000	-	4,75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IV. 발행주식의 총수 (II- III)		4,750,000	-	4,750,000	-
V. 자기주식수		-	-	-	-
VI. 유통주식수 (IV- V)		4,750,000	-	4,750,000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75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750,000	-
	우선주	-	-

* 모집 전에 취득한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간계약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주요배당지표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제2기	제1기
주당액면가액(원)		100	100	100

구 분	주식의 종류	당기	전기	전전기
		제3기	제2기	제1기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63	94	-3
(연결)주당순이익(원)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주)	-	-	-	-
	-	-	-	-
	-	-	-	-

7. 정관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명의개서대리인 -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전자등록 - 주식의 전자등록 - 삭제 - 3월 -> 3개월

정관변경일	해당주총명	주요변경사항	변경이유
2019년 0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제13조 제14조 -> 제13조
		- 소집시기	- 3월 -> 3개월
		- 외부감사인의 선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
		- 시행일	- 2019년 3월 26일

II.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 각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른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취 득한 자(이하 " 공모전 주주 등" 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 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 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일정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항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①항 및 ②항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①항 및 ②항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①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②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③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 고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요건 정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비 고
1.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1.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2.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3.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을 유사 업종 영위하는 법인의 합병가액과 비교 공시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2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당사는 정관에 기재 된 산업군에서 저성장을 돌파할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주목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합병대상 유망기술]

분야	기술	내용	예상 변화
바이오 /의료	①바이오의약품	기존 치료제보다 근본적 치료를 통해 난치성 질환 치료	・의료비 지불기준의 변화 ・예방형 건강보험 출시 ・미용/항노화 산업 부상
	②의료기기	고령화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등과 접목한 의료기기 등장
IT (소프트웨어/서비스)	①상황인식 기술	사용자 상황(행위/생체신호/이력/환경)에 맞게 적절한 기능을 자동 수행	・타겟마케팅 정교화 세분화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패러다임 변화 가속화
	②빅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	・개인 맞춤별 마케팅 가능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립
신재생 에너지	①포스트배터리	구부림(플렉시블), 고밀도(전고체), 저가격(금속이온) 전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성장 ・전기차/전력저장시스템 저변 확대
	②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속적 기술기용 하락에 따른 시장 확대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①Carbon Capture & Storage	화석연료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일부를 활용하는 기	

분야	기술	내용	예상 변화
탄소저감에너지		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시장 성장 ・정부의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
	②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	
게임 / 모바일	①e- 스포츠	게임을 매개로 하는 스포츠 경기	・게임시장 성장에 따른 고성장 ・글로벌 브랜드들의 마케팅 수단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채택
	②모바일게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게임 컨텐츠 제공	・One Source, Multi Use의 성장 ・오픈마켓 자율심의제 도입으로 내수, 수출 확대
전자/통신	①웨어러블 디바이스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컴퓨터 기기	・섬유산업이 하이테크化 ・기기의존형 헬스케어 확대
	②3D프린팅	3차원 설계도에 따라 한 층씩 소재를 쌓아 올려 입체 형태로 만드는 기술	・개인 맞춤형 제조 확대 ・나노/생명/항공 분야 활용
신소재/나노융합	①초경량 소재	마이크로래티스 등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	・항공우주분야에서 운송수단으로 응용분야 확대 ・에너지 절감, 가격하락전망
	②신소재	전자의 이동속도가 빠르고 투명하며 구부림이 가능한 소재 '그래핀'	・현재 반도체보다 빠른 데이터처리 속도 ・투명하고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구현 가능
고부가 식품산업	①여성 호르몬제	체내에 부족한 호르몬을 주성분으로 하는 대체의약품	・개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약물 의존도 하락에 따른 부작용 감소
	②프로바이오틱스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등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 기능성 식품	・개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 ・Natural Medicine 시장 확대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

당사는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국내외 기관에서 선정된 유망기술을 토대로 상기한 8개 분야의 16개의 기술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재 동 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계획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유관 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중 현금창출능력을 보유(안정성)하고 합병 이후 주가상승을 위한 성장성이 확보되었고, 업종 내에서 지속적 신제품 개발과 신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합병대상업종의 현황 및 전망

1) 바이오/의료

바이오산업은 의료/제약, 화학, 식품, 농업 등 관련분야가 다양하며 응용범위가 넓은 산업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무형의 가치가 투입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통산업 또는 신기술과 결합하여 다양한 산업적 응용과 신사업 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산업이며,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EvaluatePharma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 의약품 시장 8,120억 달러 중 바이오의약품 (치료용 단백질, 치료용 항체, 백신) 시장은 2,000억 달러 규모로 약 2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2022년 약 3,3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여 전체 시장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역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두뇌집약적 산업으로 정밀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며, 높은 의학수준과 이와 연관된 정밀부품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2016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360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노령인구의 증가, 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 실버산업의 발달 등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관심이 높아져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6.1%의 고성장을 보이며 2020년에는 약 3,358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는 재조합 단백질(1세대), 항체(2세대) 의약 제품군을 이을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줄기세포나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하여 체내에 주입하는 재생의료 관점으로 질병을 치료하고자하는 것으로 1990~2000년대에는 주로 피부세포나 연골세포를 이용한 피부재생 및 연골결손 치료제였으나, 최근에는 암, 퇴행성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 물질인 DNA, RNA를 체내에 직접주입하여 결핍 및 결함 유전자를 교정하는 가장 근원적인 질병 치료법입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와 달리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여 암, 퇴행성 질환, 유전병 등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기술로 기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효과 발현 미흡, 생명윤리 이슈 등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워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 세포 배양 및 조작 기술, 유전자 분석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기술적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등지에서

허가되면서 제도적인 면 또한 정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투자와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리서치 컨설팅 업체인 Frost & Sullivan의 Report에 따르면 전세계 세포치료제 시장은 2015년 약 40억 달러에서 연평균 20.1% 성장하여 2020년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계 유전자치료제 시장은 2015년 약 6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6.0% 성장하여 2020년 약 19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민간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의료기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기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5조 9천억원 규모로 2006년 이후 연평균 11.5%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약 356조원 규모로 2020년까지 약 461조원으로 연평균 6.1%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고령화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외진단 및 분자진단 등 헬스케어 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와 연계된 다양한 형태의 ICT융합 의료기기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4년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융합의료기기 및 진단제품 등 ICT융합 신시장 개척 방안 및 여러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정부의 지원과 국내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2) IT(소프트웨어/서비스)

세계 소프트웨어(SW) 시장은 2013년 약 9,487억 달러에서 연평균 4.7%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 약 11,4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약 13,088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SW시장은 2013년 약 99억 달러에서 연평균 2.3% 성장하여 2017년 약 1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116억 달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SW시장 규모는 세계 SW시장에서 16위에 그치고 있으나, SW산업이 모바일을 넘어 자동차, 유통 등 생활 전반에 필수적 요소가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SW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엔지니어들을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 또한 2000년 전부 개정된 이래 28차례 일부 개정만 이뤄졌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2018년 3월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소프트웨어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 강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보호, 인재 양성 및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 근거 등이 신설되어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상황인식기술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상황인식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황인식기술은 사람이 지시하기 전에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대응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등의 위치정보와 과거 생활이력, 가입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2010년 인텔 최고기술책임자인 저스틴 래트너는 상황인식 기기들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바를 예측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개인 비서와 같은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하드 센서와 소프트 센서의 결합을 이용한 상황인식컴퓨팅은 새로운 차세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개발자들에게 선사할 것" 이라고 밝히며 상황인식기술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함께 상황인식인공지능기술(Situation-Aware AI)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얼굴 표정에서 감정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감정에 맞는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동영상 촬영 앱인 Magic에서부터 스마트홈 단말 제어, 자율주행차까지 다양한 분양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인식인공지능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 보안카메라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해 자동으로 TV를 켜주거나 거실온도를 자동조절하는 등의 스마트 홈 기능을 가능케하며,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다른 차량의 주행의도를 파악하는 자율주행을 가능하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식기술은 자율주행차 외에도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Amazon Alexa와 같은 인공지능 개인비서와 상황인식기술을 통한 스마트홈 기술이 결합한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②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치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의사결정이나 미래 예측에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과 기업 정보의 데이터화로 디지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빅테이터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2012년 다보스포럼에서 그 해 가장 주목 해야 할 과학기술 1위로 빅데이터를 선정하였고, 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역시 2012년 10대 전략기술로 빅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모든 산업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분석, 예측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새로운 마케팅도구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의 신규노선 계획 수립, 민원 패턴 분석 등 공공정책 영역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빅데이터 산업의 성장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에너지

최근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와 2차전지입니다.
특히 최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매년 60~70%씩 급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중 풍력, 태양광, 바이오연료는 시장개화 내지 성장단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재료, 설계, 조립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집약된 기술 집약적 산업입니다.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태블릿 PC, 휴대폰, 전동공구 등 휴대제품의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기의 휴대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점차 그 적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소형전지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ESS는 친환경에너지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전지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전기차용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Research 회사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시장 규모는 2016년 46.6GWh였으며 2020년 119.7GWh, 2025년 254.9GWh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① 포스트배터리

지금까지의 2차전지는 주로 IT용 제품(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사용되어왔으며, 2015년 IT용 2차전지 수요량은 전체 2차전지 시장에서 5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30년에는 전기차용 2차전지 수요량이 전체 2차전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IT용 비중은 1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기차용 2차전지 시장은 2016년 약 9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었으며, 2020년 182억 달러, 2025년에는 약 9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기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기차용 2차전지의 수요 또한 위와같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기차용 전지로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개선에는 한계가 왔습니다. 현재 리튬이온전지로의 에너지밀도로는 전기차 수요자들이 원하는 충분한 항속거리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많은 차세대 전지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Bosch가 2016년 공개한 Powertrain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에 따르면 리튬이온전지는 2020년 에너지 밀도 향상의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2020년 이후에는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전고체 전지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sch, Toyota, Dyson 등은 향후 2~3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 또한 전고체 전지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전고체 전지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등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실용화를 직전에 앞두게 되면서 플렉시블 배터리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의 많은 전지업체, 벤처회사, 연구소 등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포스트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플렉시블 배터리는 혁신적인 디자인의 디바이스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용량과 가격이 개선된 배터리는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도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에너지 대체,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로 각국에서 국가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가격하락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IEA의 Renewables 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재생에너지의 신규 발전설비는 165GW로 전 세계 신규 발

전설비용량의 약 2/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8,000TWh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22년까지 30%이상 도달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년 태양광 발전은 다른 재생에너지원 대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용량은 2015년 대비 50% 증가한 74GW였으며, 처음으로 태양광 용량 증가가 석탄 등 다른 연료의 용량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 해상풍력 등 풍력 발전 또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열 발전, 바이오에너지 등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형적 제한이 비교적 덜하고 대규모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성장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력 시장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탄소저감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 산으로 향후 기후 변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선진국들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의거 각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할당받았었습니다. 이 후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온도 상승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119국가)이 자국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기초인 리마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 자발적 기여 보고서를 유엔 기후 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자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19개 국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2012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5~88%수준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며,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CO2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국내에서 배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양 대비 30%를 줄이기로 중기 온실 감축 목표를 확정하였고,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CO2 포집 및 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등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에 약 9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투자할 계획으로 탄소저감에너지 산업 전반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CCS(Carbon Capture & Storage)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포집, 분리한 뒤 압축, 수송하여 안전하게 저장 또는 일부 활용 하는 기술 입니다. 석탄/가스/바이오매스 발전설비뿐만 아니라 비료, 정유, 철강, 시멘트 산업시설에 적용 가능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3대 저 탄소기술 중 하나인 CCS는 미래에 화석연료의 지속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미 국내에서 기술개발 및 실증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산화탄소의 제어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속에 향후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사업이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풍력, 태양광 등 발전소를 지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 양 만큼의 권리를 다른 기업에 팔아 수익을 거두는 사업으로, 교토의정서(지구 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제 12조에 정의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파리협약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게임 / 모바일

게임산업은 첨단 기술집약적인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제작 원가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충분한 개발자금, 신기술 개발 및 선진기술의 도입, 우수한 제작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게임산업은 원자재나 대량의 설비투자 없이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매우 높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거부감 또는 문화적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더불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등과 같은 문화적 원천을 공유하는 등 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한편, 수요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제품 판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사업 실패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벤처적 요소가 강한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 게임, 극히 소수의 주도적 제품에 의한 시장 지배가 극명합니다.

게임 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2017년 전세계 게임산업의 규모는 전년 대비 7.8% 성장한 1,089억 달러였으며, 2020년 까지 연평균 5.7% 성장하여 1,28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게임산업의 빠른 성장의 영향이며, 당분간 아시아권 중심의 고성장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e-스포츠

e-스포츠는 일렉트로닉 스포츠를 의미하는 용어로,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매개로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e-스포츠의 종목으로는 실시간 전략게임, 1인칭 슈팅게임, 경주게임과 같은 다양한 장르들이 존재하며, 오버워치, 리그오브레전드, 카운터스트라이크, 스타크래프트 등이 대표적인 e-스포츠 게임입니다.

게임산업의 성장에 따라 게임을 매개로 하는 e-스포츠 시장도 고 성장 추세를 유지중으로 게임 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e-스포츠의 시장 규모는 2017년 전년대비 40% 이상 성장한 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을 전망되며, 2020년까지 연평균 28%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여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e-스포츠의 팬 규모는 현재 4억명이며, 2020년에는 6억명 이상의 규모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며, e-스포츠 팬 및 시청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광고 및 중계권, 스폰서쉽 등의 규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e-스포츠에 투자하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산업의 한가지로 보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최고의 마케팅 수단으로 e-스포츠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e-스포츠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의 시범경기 채택 및 2022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유입니다.

국내의 경우 법률 및 정책적 규제로 인하여 성장 제약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과 함께 e-스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며, 아시안게임 채택 등으로 정부의 법률 및 정책적 규제 약화되고, e-스포츠 시장을 산업으로서 지원할 경우 게임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② 모바일게임

모바일게임은 스마트폰을 소유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바일게임의 편의성은 관련 시장 규모를 급격하게 성장시켰으며, 게임 조사업체 Newzoo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는 1,089억 달러로 이중 모바일게임의 비중이 약 461억 달러, 42%를 차지하며 2020년까지 649억 달러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은 스마트폰의 확산뿐 아니라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등장으로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TV, VR기기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되며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의 새로운 성장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점점 다양해지고 모바일게임을 구동할 수 있는 기기들의 성능이 고도화됨에 구동되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바일게임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구조로, 기존의 진입장벽을 해소해 주어 스마트폰 게임관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는 내수와 수출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줌으로써 모바일게임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6) 전자/통신

전자/통신 산업은 한국 전체 GDP의 10.4%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80년대 흑백TV, 카세트 등으로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 반도체/가전 2000년대 후반 디스플레이/TV를 거쳐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3대 주력 IT산업은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대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①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나 의복 등에 착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IT 기기로 스마트폰을 이을 포스트모바일기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군사 훈련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적용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현재 시장에서 스마트워치, 스마트 글래스, 피트니스 팔찌 등의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많은 전자?가전 업체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들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IMS Research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2015년 110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42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는 인관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을 인식할 수 있는 NUI(Natural User Interface)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인 음성과 동작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최근 음성/동작 인식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기업들은 음성/동장인식 앱 개발사들을 인수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투자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웨어러블 컴퓨터에 적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도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 발전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웨어러블 컴퓨터의 도입에 맞추어 환자의 주요 생체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주는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등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미래성장동력・산업엔진 종합실천계획'과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스마트폰 시장을 이을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② 3D프린팅

3D프린팅은 제조방식의 하나로써 잉크 대신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의 소재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3차원으로 설계된 도면을 무수히 많은 2차원 단면으로 나누어 쌓아 올리는 것으로 적층가공방식이라고 불립니다. 처음 3D프린터가 발명되었을 때의 목적은 상품을 내놓기 전 시제품을 제작하여 문제점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3D프린터의 사용 목적이 다양해져 현재는 시제품 제작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학 산업, 건축 등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D프린터의 세계 시장은 2015년 51억 달러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31% 성장할 것으로 Wohlers Associate은 전망하였으며, 국가별 누적 사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 세계 37.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중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차세대 제조업 혁명의 대표주자로 거론하며 미 전역에 3D 프린터 연구개발센터를 15곳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EU 역시 3D프린팅 기술을 언급하며 2020년까지 GDP의 제조업 비중을 20%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4년 4월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내이식형 의료제재 생산 등의 기술개발과 지역별 체험, 제조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법 및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7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D프린팅 산업이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정책들과 함께 3D프린팅 시장 규모의 확대와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고 산업 진출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7) 신소재 / 나노융합

모든 산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 생산물 중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으로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품소재산업은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출-내수 기업 간, 대-중소기업간 경제성과의 전파 정도를 결정함으로써 균형적인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 부분이 발전하여 산업 내 분업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자본 수익률이 커지므로 부품 소재산업은 경제 전반의 투자활력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① 초경량소재

최근 들어 깃털보다도 가벼운 초경량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6년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만든 에오로겔(Aerogel)이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재되었고 2011년 미국 UC어바인 휴즈연구소와 캘리포니아공대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마이크로래티스가 다시 세계 최경량 물질로 등록됩니다. 마이크로래티스의 무게는 1cm^3 당 0.9mg입니다. 2012년에는 마이크로래티스보다 35배가량 가벼운 에어로그래파이트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초경량 소재들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전도성, 탄성, 에너지 흡수 등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 적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경량 소재는 우주항공,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세계 각국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세계 경량 소재 시장은 2015년 175조원에서 2023년 47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초경량 소재 기술은 선진국의 60~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계획(2017~2021)"을 토대로 초경량 소재 경쟁력 향상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투자 리스크가 크고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 투자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인증 기반과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기업 및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초경량 소재의 개발은 앞으로 더욱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② 신소재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가 확산되면서 디스플레이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를 위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개발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줄 소재로 '그래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은 탄소 원자들이 벌집모양 구조로 한 층을 이루고 있는 2차원 물질입니다. 전자 이동속도가 반도체의 재료인 실리콘보다 20배 이상 빠르고, 열전도율도 구리보다 10배 높으며, 탄성률은 강철대비 약 7배, 인장강도 또한 강철대비 약 200배 높습니다. 이러한 그래핀은 현재 반도체의 속도 및 전력소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소재이며, 기존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부각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투명성과 신축성이 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의 소재로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기대감 속에 각 국에서 정부 주도로 그래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럽 17개 국가, 60개 기관이 참여하는 'EU Graphene Flagship'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10년간 총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며, 영국 정부는 5,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그래핀 분야 조기 상용화를 위하여 2013년 '그래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6년간 470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8) 고부가 식품산업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베이비붐세대(50~68세)의 노인 인구층 진입 시작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UN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일본, 한국의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14세 미만 인구)는 각각 69.8%, 221.6%, 123.7%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치료시장 -> 사전진단시장 -> 사전예방(건강기능식품)시장으로 건강관련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Nutrition Business 저널에 따르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5년 1,179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677억 달러까지 연평균 7.3% 성장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연평균 성장률 10.4%)을 필두로 한 아시아(연평균 성장률 9.5%, 중국 및 일본 제외) 신흥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시장규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시아 신흥국 소득의 증가와 빠른 고령화 추세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약 21억 달러(2조 3,300억원)으로 저년 대비 16.2%(2조 52억원, 2014년) 성장하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① 여성호르몬제

여성호르몬제 산업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산업으로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산업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고령화로 인한 폐경 여성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여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성호르몬제 산업은 일반적으로 소재의 개발이 어렵고 핵심 기술력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으며, '건강'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을 충족시키는 분야이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따라서 가격보다는 소재의 효능 및 부작용 여부 등 품질이 주요 경쟁요소인 산업입니다. 특히 여성호르몬제의 경우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많은 개발비용과 실패가능성을 갖고 시작하지만 제품화 성공 이후에는 호르몬 부족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효능에 대한 가치와 여성호르몬제에 대한 높은 수요층의 존재로 인해 판매가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원재료가 비교적 단가가 낮은 천연물, 화학 소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원가 대비 판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여성호르몬제 시장은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증대 등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은 고령화 인구의 증대로 인해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덴마크, 일본, 프랑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수의 기업이 유산균을 배양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시장은 식품산업, 화장품산업, 축산업, 유가공 산업, 제약 산업 등 그 사용이 매우 폭넓고 다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은 유익균 증식, 유해균억제, 정장작용, 혈중콜레스테롤 감소, 면역증강, 내인성 감염억제기능, 항암효과 등 의학적으로 확인된 기능만 하여도 매우 다양하여 동 기능과 관련하여 항궤양제, 항생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암제 등 의약품으로서의 적용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동 의약품 시장이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의약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박테리아를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향후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의약품 시장은 기능성식

품 시장 규모를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에서의 프로바이오틱스의 이용은 점차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능성건강식품회사의 개념이 단순한 건강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특정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atural Medicine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향후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 제58조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제58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금 반환 등은 회사의 정관 제59조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반환하고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관 제59조 (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 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사업성, 수

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는 공모 이후 기업인수목적회사 본연의 목적인 성공적 합병을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량 중소비상장기업을 광범위하게 타겟팅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정관상 합병대상법인 및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2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하며, 동 산업군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2. IT (소프트웨어/서비스)
3. 신재생에너지
4. 탄소저감에너지
5. 게임 / 모바일 산업
6. 전자 / 통신 관련 산업
7. 신소재 / 나노융합
8. 고부가 식품산업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제1항 규정의 중점 산업군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

구 분	요건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구 분	요건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합병 등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지정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지정감사를 수감하여야 함

⑵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57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 제한)

- 생 략 -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 (이하 " 공모전 주주 등" 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 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 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 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 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 등 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 등 간 계약서 제5조(주식 등의 양도 및 처분제한 등 권리제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추진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 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상대방	금 액	비 고
회계법인	100백만원 / 건	합병대상기업 평가 용역비
법무법인	50백만원 / 건	합병 관련 법률자문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 등의 투자 금액 1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구분	제3(당)기 (2020. 12. 31)	제2(전)기 (2019. 12. 31)
감사인(감사의견)	성현회계법인(적정)	재정회계법인(적정)
자산총계	9,938,244,988	9,854,339,517
유동자산	9,938,244,988	9,854,339,517
비유동자산	-	-
부채총계	941,626,054	921,485,421
유동부채	-	1,320,000
비유동부채	941,626,054	920,165,421
자본총계	8,996,618,934	8,932,854,096
자본금	475,000,000	475,000,000
자본잉여금	8,367,192,979	8,367,192,979
이익잉여금(결손금)	154,425,955	90,661,117
영업수익	-	-
영업비용	24,900,406	47,862,001
영업이익(손실)	(24,900,406)	(47,862,001)
금융수익	120,417,083	176,342,111
금융비용	23,870,793	23,257,710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71,65,884	105,222,400
당기순이익(손실)	63,764,838	93,647,936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3(당)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 기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자산					
유동자산			9,938,244,988		9,854,339,517
현금및현금성자산	4,12,18	85,201,726		222,843,722	
단기금융상품	5,7,12,18,19	9,825,225,248		9,6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6,12,18	18,512,728		16,537,343	
선급법인세		9,305,286		14,958,452	
비유동자산			-		-
자산총계			9,938,244,988		9,854,339,517
부채					
유동부채			-		1,32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	-		1,320,000	
비유동부채			941,626,054		920,165,421
전환사채	9,12,19	932,123,208		908,254,285	
이연법인세부채	15	9,502,846		11,911,136	
부채총계			941,626,054		921,485,421
자본					
자본금	10		475,000,000		475,000,000
자본잉여금	11		8,367,192,979		8,367,192,979
이익잉여금	12		154,425,955		90,661,117
자본총계			8,996,618,934		8,932,854,096
부채와자본총계			9,938,244,988		9,854,339,517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 기	제 2(전) 기
영업수익		-	-
영업비용	14	24,900,406	47,862,001
영업손실		(24,900,406)	(47,862,001)
금융수익	13	120,417,083	176,342,111
금융비용	13	23,870,793	23,257,710
기타영업외비용		1,87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645,884	105,222,400
법인세비용	15	7,881,046	11,574,464
당기순이익		63,764,838	93,647,936
기타포괄손익		-	-
총포괄이익		63,764,838	93,647,93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6	13.42	19.72
희석주당이익	16	13.42	19.7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3(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총 계
2019.01.01(전기초)	475,000,000	8,367,192,979	(2,986,819)	8,839,206,16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93,647,936	93,647,936
2019.12.31(전기말)	475,000,000	8,367,192,979	90,661,117	8,932,854,096
2020.01.01(당기초)	475,000,000	8,367,192,979	90,661,117	8,932,854,09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63,764,838	63,764,838
2020.12.31(당기말)	475,000,000	8,367,192,979	154,425,955	8,996,618,934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3(당) 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 2(전) 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3(당)기		제 2(전) 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7,583,252		105,276,307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26,222,276)		(47,862,001)	
1) 당기순이익(손실)		63,764,838		93,647,936	
2) 가감:		(88,667,114)		(141,509,937)	
이자비용		23,868,923		23,257,710	
이자수익		(120,417,083)		(176,342,111)	
법인세비용		7,881,046		11,574,464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1,320,000)		1,320,000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1,320,000)		1,320,000	
2. 이자의 수취		118,441,698		179,442,028	
3. 법인세의 납부		(4,636,170)		(27,623,720)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5,225,248)		100,000,0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25,225,248)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225,225,248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137,641,996)		205,276,307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22,843,722		17,567,415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Ⅳ+Ⅴ)			85,201,726		222,843,722

"첨부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5. 재무제표 주석

제 3(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2(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당사의 개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8년 9월 12일자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8년 11월 29일 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2월 12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주)이안허브	480,000	10.11%
이베스트투자증권	346,608	7.30%
(주)상상인저축은행	230,000	4.84%
신한금융투자	251,315	5.29%
(주)상상인증권	20,000	0.42%
기타	3,422,077	72.04%
합계	4,75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주요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금융상품

1) 금융자산의 인식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분류 명칭에 따라 후속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이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에 대해 위 세가지 범주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인식시점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하고 이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를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이며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및 신용위험에 대가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측정하고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며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의 금융수익에, 손상차손(환입) 및 외환손익은 기타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불가능 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을 제외하고 해당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시키지 않습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단기매매목적의 지분증권, 파생상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준서 1109호의 분류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취소 불가능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분리하고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에 먼저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관련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기대신용손실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손상측정대상 금융자산에 대해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개별평가 및 대상금융자산의 경제적 성격을 고려한 집합평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할 때 신용등급(외부평가기관 및 내부에서의 평가결과 모두 참고), 재무구조, 연체정보 및 현재 및 미래의 예측가능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초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매출채권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최초인식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전체기간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이외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지분증권제외) 대해서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한 손실충당금을 인식하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거나 신용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측정한 손실충당금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 시의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4)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비용
당기법인세비용은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으로서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6)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은 전환사채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합니다.

(7)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20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제・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개정 기준서는 중요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창출에 유의적으로 기여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산출물에서 원가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기말 현재 제정・공표되었거나 공표예정이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동 제・개정 기준서의 개정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4호 '보험계약' 및 제 1116호 '리스'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지표 대체시 장부금액이 아닌 유효이자율을 조정하고, 위험회피관계에서 이자율지표 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위험회피회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1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 년 1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예치기관	당기	전기
보통예금	국민은행	85,201,726	80,850,999
	우리은행	-	1,179
금전신탁	국민은행	-	141,991,544
합계		85,201,726	222,843,722

5.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예치기관	당기	전기
정기예금	국민은행	9,825,225,248	9,600,000,000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미수수익	18,512,728	16,537,343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예치기관	당기	전기
단기금융상품	국민은행	8,725,225,248	8,500,000,000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2018년 12월 3일자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미지급금	-	1,320,000

9. 전환사채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종 류	발행일	만기일	구 분	당기	전기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018. 9. 17	2023. 9. 17	액면금액	1,000,000,000	1,000,000,000
			전환권조정	(67,876,792)	(91,745,715)
			장부금액	932,123,208	908,254,285

(2)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표시이자율	0%
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2018년 10월 17일부터 2023년 9월 16일까지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자본금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주
발행한 주식의 총수	4,750,000주
주당액면가액	100
자본금	475,000,000

11. 자본잉여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기	전기
주식발행초과금	8,258,930,000	8,258,930,000
전환권대가	108,262,979	108,262,979
합계	8,367,192,979	8,367,192,979

12. 이익잉여금

당사의 당기와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제 3(당) 기		제 2(전) 기	
	처리예정일 : 2021년 3월 25일		처리확정일 : 2020년 3월 26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154,425,955		90,661,11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결손금)	90,661,117		(2,986,819)	
2. 당기순이익	63,764,838		93,647,936	
Ⅱ.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4,425,955		90,661,117

13. 범주별 금융상품

(1) 당기말 미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장부금액	공정가치(*주)	장부금액	공정가치(*주)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85,201,726	-	222,843,722	-
단기금융상품	9,825,225,248	-	9,600,000,00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8,512,728	-	16,537,343	-
금융자산 합계	9,928,939,702	-	9,839,381,065	-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1,320,000	-
전환사채	932,123,208	-	908,254,285	-
금융부채 합계	932,123,208	-	909,574,285	-

(*주)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손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부채	상각후원가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부채
<금융수익>				
이자수익	120,417,083	-	176,342,111	-
<금융비용>				
이자비용	-	23,870,793	-	23,257,710

14. 영업비용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여비교통비	76,300	318,670
접대비	4,549,600	10,808,230
세금과공과금	62,500	247,610
차량유지비	174,816	1,203,000
운반비	-	62,000
교육훈련비	180,000	-
도서인쇄비	431,250	1,463,000
지급수수료	19,425,940	33,759,491
합 계	24,900,406	47,862,001

15. 법인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기	전기
당기법인세부담액	10,289,336	12,674,988
일시적차이의 변동액	(2,408,290)	(2,899,339)
이월결손금에 의한 이연법인세비용	-	1,798,815
법인세비용(수익)	7,881,046	11,574,464

(2)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기	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645,884	105,222,400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7,881,046	11,574,464
조정사항	-	-
법인세비용	7,881,046	11,574,464

(3)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기

(단위: 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자본잉여금반영	당기말금액
전환권조정	(10,092,029)	2,625,582	-	(7,466,447)
미수수익	(1,819,107)	(217,292)	-	(2,036,399)
합계	(11,911,136)	2,408,290	-	(9,502,846)

② 전기

(단위: 원)

구 분	기초금액	당기손익반영	자본잉여금반영	당기말금액
전환권조정	(12,650,377)	2,558,348	-	(10,092,029)
미수수익	(2,160,098)	340,991	-	(1,819,107)
이월결손금	1,798,815	(1,798,815)	-	-
합계	(13,011,660)	1,100,524	-	(11,911,136)

16. 주당손익

(1) 기본주당순손익

당기 및 전기 중 당사의 기본주당순손익 및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내 역	당기	전기
당기순이익(손실)	63,764,838	93,647,936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750,000	4,750,000
기본주당순이익(손실)	13.42	19.72

(2) 희석주당순이익

당기 및 전기 당사의 기본주당순손익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내 역	당기	전기
1)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63,764,838	93,647,936
조정금액		
전환사채 이자비용	21,245,006	20,699,362
희석보통주당기순이익	85,009,844	114,347,298
2)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750,000주	4,750,000주
잠재적보통주식수(전환사채)	1,000,000주	1,000,000주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5,750,000주	5,750,000주
3) 희석주당순이익(*주)	13.42	19.72

(*주) 당기 및 전기에 희석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통주당순이익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7. 특수관계자

당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특수관계자 명칭
지배기업	(주)이안허브
기타특수관계자	(주)상상인증권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특수관계자명칭	당기	전기
	전환사채	전환사채
(주)이안허브	520,000,000	520,000,000
(주)상상인증권	480,000,000	480,000,000
합 계	1,000,000,000	1,000,000,000

18. 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자본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와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금융자산에서 발생합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과 목	금 액
현금및현금성자산	85,201,726
단기금융상품	9,825,225,248
미수수익	18,512,728
합 계	9,928,939,702

(2) 유동성위험

당사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영업, 투자 및 재무 관련 장단기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는 적정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기관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현금흐름	1년 이내	2년 이내	3~5년
전환사채	932,123,208	1,000,000,000	-	-	1,000,000,000

(3) 자본위험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여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차입금 총계(A)	932,123,208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B)	9,910,426,974
순 차입금(C=A-B)	(8,978,303,766)
자본 총계(D)	8,996,618,934
순차입금비율(E=C/D)(*)	-

(*) 순 차입금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비율 산출을 생략하였습니다.

19. 약정사항

(1)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은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4) 당사는 (주)상상인증권과 주식총액인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식의 총액인수 및 일반공모를 위탁하였습니다. 당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 합병등기일 익일에 150,000천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0. 동 재무제표는 2021년 2월 9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0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

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
제5조 (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450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100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550
합 계	1,100

(주1) 인수수수료(3억원), 공모시 발행제비용 등
(주2) 기장대리(3년간 총 14.4백만원), 회계법인 감사수수료(3년간 총 36백만원), 명의개서대행 및 기타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수수료 50백만원, 회계자문수수료 100백만원, M&A자문 및 실사수수료 400백만원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KB국민은행에 신탁하고 있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1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

이 신탁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18년 09월 17일	1,000	0.0	-	2023년 09월 17일	미상환	상상인증권(주)
합 계	-	-	-	1,000	-	-	-	-	-

마.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바.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공모	-	-	-	-	-	-	-	-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사.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아.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자.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전자등록)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상상인이안제1호 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18년 09월 17일	1,000	0.0	-	2023년 09월 17일	미상환	상상인증권(주)
합 계	-	-	-	1,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I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사회는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3기 사업년도의 회계 및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경영진단에 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경영진단의 개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2.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당사는 2018년 09월 12일에 설립된 이후 코스닥시장상장을 위한 공모를 통하여 총 8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공모금액의 100%를 국민은행에 예치시킨 상태입니다

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강조사항 등	핵심감사사항
제3기(당기)	성현회계법인	적정	-	-
제2기(당기)	재정회계법인	적정	-	-
제1기(전기)	재정회계법인	적정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감사계약내역		실제수행내역	
			보수	시간	보수	시간
제3기(당기)	성현회계법인	외부감사	1,200만원	-	1,200만원	44
제2기(당기)	재정회계법인	외부감사	1,200만원	-	1,200만원	56
제1기(전기)	재정회계법인	외부감사	1,200만원	-	1,200만원	44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기(당기)	-	-	-	-	-
	-	-	-	-	-
제2기(당기)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2020년 02월 11일 개최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

22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의 회계기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성현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및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이기범	2016.06 ~ 현재 : 이산 감정평가법인 2012.01 ~ 2013.04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주식배당 결정

구 분	내 용
부의 및 보고사항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회사의 최대주주(거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 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모집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화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 회사의 임원 겸임

구 분	내 용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에 대한 직무 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자 수/재적자 수) 주1)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기범 (출석률 : 92.3%) 찬반여부	비고
1	2018.09.12	제1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에 관한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2	2018.09.13	제1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2호 의안 : 내부규정 제정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자 수/재적자 수) 주1)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기범 (출석률 : 92.3%) 찬반여부	비고
3	2018.09.17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4	2018.09.18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2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3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4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5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5	2018.09.19	제1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계약 체결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6	2018.09.28	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7	2018.10.26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8	2019.02.11	제1호 의안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9	2019.02.26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10	2019.04.08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11	2019.11.01	제1호 의안 : 본점 이전의 건	가결 (3/3)	불참	-
12	2020.02.10	제1호 의안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13	2020.02.24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가결 (3/3)	찬성	감사참석

주1) 참석자 및 재적자는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기범 (출석률 : 92.3%) 찬반여부
		- 창립사항 보고의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기범 (출석률 : 92.3%)
			찬반여부
1	2018.09.12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 주금 납입의 건 - 주식발행사항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에 관한 건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해당사항 없음
2	2018.09.12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 결정의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찬성
3	2018.09.13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제정의 건	찬성
4	2018.09.17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5	2018.09.18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 기장대행 회계법인 선정의 건 -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찬성
6	2018.09.19	- 공모자금 예치 약정 체결의 건	찬성
7	2018.09.28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의 건	찬성
8	2018.10.26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의 건 - 총액 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찬성
9	2019.02.11	-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10	2019.02.26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찬성
11	2019.04.08	-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찬성
12	2019.11.01	- 본점 이전의 건	불참
13	2020.02.10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14	2020.02.24	- 제2기 정기주주총회 결정의 건	찬성

주1) 참석자 및 재적자는 당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사외이사 1인을 기준으로 한 현황입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포함한 사내이사 1인과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의 사외이사는 산업, 경영 및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사외이사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내역

사외이사 교육 실시여부	사외이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필요시 실시 예정

사외이사 및 그 변동현황

(단위 : 명)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사외이사 변동현황		
		선임	해임	중도퇴임
3	1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 감사 설치 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서명원	2016.11 ~ 현재 : (의)한양의료재단 남양주한양종합병원 운영지원부 부장 2012.09 ~ 2013.05 : 신영증권 투자금융 부장 2011.04 ~ 2012.08 : KTB투자증권 채권중개 부장 2010.04 ~ 2011.03 : 유진투자증권 채권중개 부부장 2005.03 ~ 2010.03 : GFI Group Singapore 부장	해당사항 없음	-

(3)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서명원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4)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비고
1	2018.09.12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에 관한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참석
2	2018.09.13	제1호 의안 :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의 건 제2호 의안 : 내부규정 제정의 건	참석
3	2018.09.17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참석
4	2018.09.18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2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3호 의안 : 외부감사 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제5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참석
5	2018.09.19	제1호 의안 : 제1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 계약 체결의 건	참석
6	2018.09.28	제1호 의안 :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의 건	참석
7	2018.10.26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참석
8	2019.02.11	제1호 의안 : 제1기 결산결과 승인의 건	참석
9	2019.02.26	제1호 의안 : 정기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참석
10	2019.04.08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소집 결정의 건	참석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비고
11	2019.11.01	제1호 의안 : 본점 이전의 건	불참
12	2020.02.10	제1호 의안 : 제2기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13	2020.02.24	제1호 의안 : 제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정의 건	참석

나. 감사 교육 미실시 내역

감사 교육 실시여부	감사 교육 미실시 사유
미실시	필요시 실시 예정

다. 감사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회사 내에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없습니다.

라. 준법지원인 등에 관한 사항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정관 제32조 제3항을 통해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를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의거하여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한편, 공모전주주(발기인인 (주)이안허브, (주)상상인증권)는 주주등간계약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이안허브	최대주주	보통주	480,000	10.11	480,000	10.11	-
계	-	보통주	480,000	10.11	480,000	10.11	-
계		보통주	480,000	10.11	480,000	10.11	-
		우선주	-	-	-	-	-

나.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및 개요

(1)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안허브	9	안희림	-	안용아	-	김정주	92.10
		-	-	-	-	-	-

(2)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이안허브
자산총계	3,542

구 분	
부채총계	3
자본총계	3,538
매출액	245
영업이익	37
당기순이익	50

(3) 사업현황 등 회사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

(주)이안허브는 현재로써는 아래 사항들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지만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주)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1호~10호 중 당사에 해당하는 각호>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2)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4) 회사의 배당의 결정

(4)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주식회사 이안허브
- 대표자 : 안희림
- 설립일 : 2016.07.25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904호(태양빌딩)
- 업 종 : 서비스업
- 주요주주 : 김정주

(5) 주요 사업내용

경영 컨설팅

(6) 주요 연혁

일 시	연 혁
2016.07.25	주식회사 이안투자테크 설립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9, 3층(역삼동, 남곡빌딩)
	설립자본금 : 550,000,000(1,100,000주, 액면가 500원)
	대표이사 이기성 취임 감사 박수용
2016.09.22	대표이사 이기성 사임 대표이사 이지연 취임
2017.06.16	대표이사 이지연 사임 대표이사 한경태 취임
2018.08.16	대표이사 한경태 사임 대표이사 안희림 취임
2018.09.05	상호변경 및 주소변경 상호변경 후 : 주식회사 이안허브 주소변경 후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2, 9층 904호(태양빌딩)
2018.09.11	자본금 변동 : 583,333,500 (제1차 상환전환우선주 66,667주 추가발행)
2019.04.04	자본금 변동 : 587,333,500 원(제2회 상환전환우선주 8,000주 추가발행)
2019.04.11	자본금 변동 : 596,038,500 원(제3회 상환전환우선주 17,410주 추가발행)
2019.06.14	자본금 변동 : 615,372,000 원(제4회 상환전환우선주 38,667주 추가발행)
2019.06.21	자본금 변동 : 619,372,000 원(제5회 상환전환우선주 8,000주 추가발행)

다.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변동원인	비 고
2018년 09월 12일	(주)이안허브	480,000	96.00	설립	-
2018년 12월 12일	(주)이안허브	480,000	10.11	IPO공모	-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이상 주주	(주)이안허브	480,000	10.11	최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	346,608	7.30	-
	신한금융투자	251,315	5.29	-
우리사주조합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구 분	주주			소유주식			비 고
	소액 주주수	전체 주주수	비율 (%)	소액 주식수	총발행 주식수	비율 (%)	
소액주주	370	396	93.43	1,646,525	4,750,000	34.66	-

4. 주식사무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제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매일경제신문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류		20년 7월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보통주	최고 주가	2,010	2,005	2,005	2,015	2,030	2,025
	최저 주가	1,990	1,985	1,985	1,990	1,995	1,990
	평균 주가	2,000	2,000	1,995	2,000	2,000	2,005
월간 거래량		130,988	93,563	147,354	175,404	112,300	151,797
최고 일 거래량		45,602	44,978	33,396	46,187	46,509	32,648
최저 일 거래량		0	3	3	1	0	2

6.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공모전 주주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계속보유확약서를 거래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신규상장)
(주)상상인증권(이하 “ 본인 등” 이라 한다)은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 甲” 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속보유의무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3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 현재 “ 본인 등” 이 소유하고 있는 “ 甲” 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 甲” 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이며, 동 기간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보관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임.
(주)이안허브(이하 “ 본인 등” 이라 한다)는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 甲” 이라 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속보유의무자로서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의3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 현재 “ 본인 등” 이 소유하고 있는 “ 甲” 의 발행주식등(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령상 의무의 이행 및 기업인수합병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 甲” 의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이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보관할 것이며, 동 기간중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동 보관주식 등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할 것임.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는 주주간 계약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공모전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주주 등 간 계약
5.2.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당사는 주주 등 간 계약서에 의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전 발행주식과 공모 시 발행주식 및 공모 후 취득한 일체의 주식(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포함)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주 등 간 계약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주주 등 간 계약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관 제59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① 제58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 등은 주식(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에 기하여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 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한고 있는 주식 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 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 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정관 제59조(예치자금 등의 반환 등)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이지연	여	1983.05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총괄	2018.01 ~ 현재 :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 2017.01 ~ 현재 : 성동구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 2017.09 ~ 2017.12 :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2016.08 ~ 2017.07 : (주)이안투자테크 내부통제위원 2016.01 ~ 2017.12 :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의원 2015.10 ~ 2016.07 : 법무법인 가우 변호사	-	-	-	28개월	2021.09.12
윤창민	남	1973.10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자문	2019.09 ~ 현재 : (주)테크트랜스 CFO 2014.02 ~ 2019.09 : (주)상상인증권 기업금융팀 팀장 2009.01 ~ 2014.01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준법감시팀 2003.01 ~ 2008.06 : (주)풍산 경영관리실	-	-	-	28개월	2021.09.12
이기범	남	1978.06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자문	2016.06 ~ 현재 : 이산 감정평가법인 2012.01 ~ 2013.04 : 미래새한 감정평가법인	-	-	-	28개월	2021.09.12
서명원	남	1972.04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2016.11 ~ 현재 : (의)한양의료재단 남양주한양종합병원 운영지원부 부장 2012.09 ~ 2013.05 : 신영증권 투자금융 부장 2011.04 ~ 2012.08 : KTB투자증권 채권중개 부장 2010.04 ~ 2011.03 : 유진투자증권 채권중개 부부장 2005.03 ~ 2010.03 : GFI Group Singapore 부장	-	-	-	28개월	2021.09.12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임 원	수행시기	M&A 관련 경력
이지연	2017년	HQ인베스트먼트 법률자문
	2017년	(주)에스비인베스트먼트 기업자문
	2017년	(주)케이에스리소스 기업자문
	2016년	(주)태풍투자 기업자문
	2016년	(주)한국대안캐피탈 기업자문
	2015년	인사이트(주) 기업자문
윤창민	2018년	(주)마이크로텍 - 골든브릿지제4호SPAC 합병 자문
	2018년	(주)테크트랜스 KONEX 상장 자문
	2017년	명진홀딩스(주) KONEX 상장 자문
	2017년	SGA임베디드(주) KONEX 상장 자문
	2016년	디엠씨(주) M&A 자문
	2015년	골든브릿지제4호기업인수목적(주) 코스닥 상장 자문
	2015년	골든브릿지제3호기업인수목적(주) 코스닥 상장 자문
이기범	2013년	우리은행 NPL 매각을 위한 투가가치 산정용역
	2013년	우리F&I NPL 투자를 위한 투자가치 산정용역
	2013년	구로동 디지털엠파이어(아파트형공장) 매각평가
	2012년	(주)삼진조선 선박평가(해외평가)
	2012년	명동 IBIS엠베서더 호텔 매각평가
서명원	-	-

나. 임원의 자격 충족 여부 검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1항	해당여부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x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1항	해당여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x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x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사외이사의 자격요건) 1항	해당여부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x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x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x
4.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x
5.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x
6. 해당 금융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x
7.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x
8. 그 밖에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금융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x

당사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1항에 의거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임원 선임관련 확약서'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18년 9월 12일부터 3년간이며,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않는 한 회사는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	내용
임원 선임관련 확약내용	1. 직무상취득한정보로서,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전에 합병대상법인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제공하지 않는다. 2.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법령과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로서의 임기는 "회사"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3년이고, 이 기간 동안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사직하고 않고 임기 동안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라.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마.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상상인이안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원 겸임/겸직 현황]

성명	겸직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소속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보유 주식수(지분율)
이지연	법률사무소 목민	변호사업	변호사	변호사	2년2개월	-	-
윤창민	(주)테크트랜스	제조업	CFO	CFO	6개월	-	-

성명	겸직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소속회사 보유주식수 (지분율)	다른 기업인수 목적회사 보유 주식수(지분율)
이기범	이산 감정 평가법인	감정평가	이사	총무	3년9개월	-	-
서명원	남양주한양 종합병원	의료서비스	부장	재무 인사	3년4개월	-	-

바.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임원의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을 예방 및 관리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 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업계에서 오랜 기간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서 커리어 및 평판을 중요시하고 당사의 임원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어,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 직원 등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직원										소속 외 근로자			비고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남	여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합 계							
		전체	(단시간 근로자)	전체	(단시간 근로자)								
-	남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아. 미등기임원 보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미등기임원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2	-	-
사외이사	1	-	-
감사	1	-	-

2. 보수지급금액

2-1. 이사・감사 전체

(단위 : 백만원)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4	-	-	-

2-2. 유형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2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1	-	-	-
감사위원회 위원	-	-	-	-
감사	1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 중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가.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는 2018년 09월 14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타법인과의 합병 등기 완료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게 금 일천만원 범위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경우 합병성공에 따른 보수는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주)상상인증권과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차 내역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성 명 (법인명)	관계	종류	소재지	수량 (면적)	2020연도		비 고
					임대	임차	
(주)상상인증권	주주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0층(대치동, 대치타워)	1평 (공용면적 포함)	-	무상임차	

5.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거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6.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8.09.12	발기인총회	-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정관 승인의 건 -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승인
2019.03.26	정기주주총회	- 제1기 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승인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2018년 12월 03일	국민은행예치(공모자금)	8,500	국민은행예치(공모자금)	8,500	-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가 코스닥상장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신탁업자((주)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 내역
	충족	미충족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신탁업자에 예치, 신탁할 것	O	-	공모자금 100%예치 신탁계약 약정체결 (국민은행)
②예치,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정관 제56조 명시 신탁계약서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주)상상인증권 (1,407억원) (2017년말 기준)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결격사유 없음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정관 제58조 명시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정관 제57조 명시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 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정관 제59조 명시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이상을 소유할 것	O	-	(주)상상인증권 5%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주)상상인증권은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주)상상인투자증권은 자기자본 1,407억원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을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10,000백만원(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500백만원, 공모금액 8,500백만원)에 (주)상상인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500백만원(발행총액의 5%)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증권신고서 등의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내역		차이발생 사유 등
		사용용도	조달금액	내용	금액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2018년 12월 03일	국민은행예치(공모자금)	8,500	국민은행예치(공모자금)	8,500	-

5.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6. 보호예수 현황

(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 (단위 : 주)

주식의 종류	예수주식수	예수일	반환예정일	보호예수기간	보호예수사유	총발행주식수
보통주	500,000	2018.09.19	-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4,750,000
전환사채	1,000,000	2018.09.19	-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상장 후 매각제한)	4,750,00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